

검 토 보 고 서

2022. 9. 28. (수)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교통건설국 소관】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2021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안 건 명

- 2021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22년 9월 5일(월)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 2022년 9월 13일(화)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지방자치법」 제144조 (예비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2021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I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합 계	16,318,969,510	14,282,107,360	13,556,397,580	725,709,780	94.92%
교통행정과	2,468,407,000	2,768,242,330	2,400,721,890	367,520,440	86.72%
교통지도과	34,000,000	40,087,390	38,218,790	1,868,600	95.34%
건설관리과	6,760,523,840	4,388,895,980	4,111,035,610	277,860,370	93.67%
도로과	6,123,860,770	6,150,585,630	6,072,125,260	78,460,370	98.72%
치수과	932,177,900	934,296,030	934,296,030	0	100%

※ 징수율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나.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합 계	27,912,769,510	21,989,071,093	3,884,148,470	57,500,878	1,982,049,069	78.78%
교통행정과	929,101,000	818,778,440	16,146,470	1,111,870	93,064,220	88.13%
교통지도과	125,580,000	94,616,410	0	0	30,963,590	75.34%
건설관리과	3,447,198,840	2,874,916,305	500,000,000	0	72,282,535	83.40%
도로과	14,356,673,770	9,990,500,553	3,143,002,000	15,002,000	1,208,169,217	69.59%
치수과	9,054,215,900	8,210,259,385	225,000,000	41,387,008	577,569,507	90.68%

※ 집행률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다. 세출결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 원)

구분	집행잔액	집행잔액원인별 금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계	1,982,049,069	24,317,032	104,996,000	36,184,660	1,140,000	1,815,411,347	0
교통행정과	93,064,220	9,614,910	6,387,000	5,415,000	0	71,647,310	0
교통지도과	30,963,590	0	934,000	0	0	30,029,590	0
건설관리과	72,282,535	0	4,499,000	30,769,690	0	37,013,845	0
도로과	1,208,169,217	0	44,675,000	0	1,140,000	1,162,354,217	0
치수과	577,569,507	14,702,122	48,501,000	0	0	514,366,385	0

라. 집행률 저조 사업 현황

【집행률(지출액/예산현액) 70% 미만 기준, 단위 : 원】

구분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교통 행정과	기본경비	76,221,000	49,999,830	0	0	26,221,170	65.6%
교통 지도과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26,240,000	17,322,390	0	0	8,917,610	66.02%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53,300,000	36,200,000	0	0	17,100,000	67.92%
	기본경비	14,040,000	9,094,020	0	0	4,945,980	64.77%
건설 관리과	국·공유 행정 재산 관리	44,310,000	29,030,720	0	0	15,279,280	65.52%
	지중화사업 (당인리발전소 앞)	862,000,000	362,000,000	500,000,000	0	0	42%
	기본경비	63,391,000	43,850,075	0	0	19,540,925	69.17%
도로과	도로제설 유지	922,333,000	528,865,740	327,208,000	15,002,000	51,257,260	57.34%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	4,354,779,000	1,913,343,180	2,441,434,000	0	1,820	43.94%
치수과	수방대비 체계 확립	281,000,000	130,551,450	0	1,076,593	149,371,957	46.46%

구분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225,000,000	0	225,000,000	0	0	0%
	기 본 경 비	108,753,000	71,655,490	0	0	37,097,510	65.89%

마. 다음연도 이월(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 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합 계(7건)			7,483,061,000	3,579,403,180	3,101,434,000	782,714,470	0	19,509,350
교 통 행정과	교 통 시 설 물 리	시설비	345,000,000	328,853,530	0	16,146,470	0	0
건 설 관리과	지 중 화 사 업 (당인리발전소 앞)	시설비	862,000,000	362,000,000	500,000,000	0	0	0
도로과	도로제설 유지	시설비	566,547,000	239,059,000	160,000,000	167,208,000	0	280,000
	도로조명 시설물 유 지 관 리	시설비	1,134,360,000	740,771,310	0	374,360,000	0	19,228,690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 업	시설비	4,350,154,000	1,908,719,340	2,441,434,000	0	0	660
치수과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 구축	시설비	225,000,000	0	0	225,000,000	0	0

바.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원)

부 서	세부사업	전용금액	사 유
합 계		3,400,000	
건설관리과	국·공유 행정 재산 관리 (시 설 비)	1,910,000	시유지 무단투기 방지용 펜스 설치를 위한 예산 전용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 월 드 컵 복 로 (시 설 비)	1,490,000	지중화사업 도로복구비 확보를 위한 예산 전용

II 특별회계

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세입 결산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합계	77,210,516,520	76,535,895,505	75,074,809,045	1,461,086,460	98.09%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6,953,004,520	6,953,005,495	6,953,005,495	0	100%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지도과)	70,257,512,000	69,582,890,010	68,121,803,550	1,464,086,460	97.9%

2) 세출 결산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합계	77,927,517,520	45,460,266,834	5,380,211,530	21,573,015	27,065,466,141	58.34%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63,666,519,520	33,007,172,850	5,380,211,530	8,789,010	25,270,346,130	51.84%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지도과)	14,260,998,000	12,453,093,984	0	12,784,005	1,795,120,011	87.32%

3)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 원)

구분	집행잔액	집행잔액원인별 금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계	27,065,466,141	93,760,335	29,737,000	3,990,000	0	2,935,467,806	24,002,511,000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25,270,346,130	0	1,865,000	3,990,000	0	1,261,980,130	24,002,511,000

구분	집행잔액	집행잔액원인별 금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 절 감 산 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지도과)	1,795,120,011	93,760,335	27,872,000	0	0	1,673,487,676	0

나. 다음연도 이월(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 원)

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합계(5건)			29,044,655,520	23,567,350,370	4,349,728,000	1,030,483,530	0	97,093,620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시설비	550,000,000	523,867,690	0	19,483,530	0	6,648,780
	연남동 공영 주차장 건설	시설비	26,633,796,220	22,997,890,880	3,342,461,000	203,000,000	0	90,444,340
	연남동 공영 주차장 건설	감리비	979,000,000	0	979,000,000	0	0	0
	연남동 공영 주차장 건설	시설 부대비	30,000,000	1,732,500	28,267,000	0	0	500
	쌍둥이어린이 공원 주차장 건설	시설비	851,859,300	43,859,300	0	808,000,000	0	0

다.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원)

부서	세부사업	전용금액	사유
합계		16,997,000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불법주정차단속 (배상금 등)	540,000	주정차단속구간 알림 시설물 하자에 의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예산 전용
	주차장 관리 (사무관리비)	5,000,000	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 발생한 국유재산 대부료 및 서울시 위탁수익금 납부를 위한 예산 전용
	주차장 관리 (시설비)	5,000,000	
	주차장 관리 (시설비)	6,457,000	망원나들목B동 주차장 상부보수를 위한 예산 전용

Ⅲ 예비비 지출

가. 일반회계 지출

(단위 : 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 사유
조 직	세부사업					
합 계		389,239,000	387,481,850	0	1,757,150	
교 통 행정과	마을법사업체 피해지원	100,000,000	100,000,000	0	0	코로나19 민생대책 추진 방안으로 코로나19로 인 해 유동인구 감소로 경 영위기에 처한 마을버스 업체에 피해지원금 지급 하고자 예비비 사용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	7,239,000	7,239,000	0	0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방역물품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
도로과	인력 운영비	282,000,000	280,242,850	0	1,757,150	도로유지보수원 공무 직 1명 퇴직금 지급 에 따른 예비비 사용

나. 특별회계 지출

(단위 : 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 사유
조 직	세부사업					
합 계		99,280,000	90,877,400	0	8,402,600	
교 통 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관리	99,280,000	90,877,400	0	8,402,600	통합주차관제 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 용 역비 및 용역 실시 결과 당초 예측하지 못한 공사비 예비비 사용

IV 기금 결산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합 계	2,224,709,219	482,014,059	1,726,077,459	1,244,063,400	2,706,723,278
도로골착복구기금	2,075,258,729	252,433,119	1,496,096,519	1,243,663,400	2,327,691,848
거리가게자립 지원기금	149,450,490	229,580,940	229,980,940	400,000	379,031,430

V 검토의견

1. 2021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

- 2021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63억 1,896만 9,510원이며, 수납액은 135억 5,639만 7,580원으로 징수율은 94.92%임.
- 2021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79억 1,276만 9,510원이며, 지출액 219억 8,907만 1,093원으로 집행률은 78.78%임.
- 집행잔액은 19억 8,204만 9,069원이며, 집행잔액 원인별 금액은 보조금 정산 잔액 2,431만 7,032원, 예산절감액 1억 499만 6,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618만 4,690원, 낙찰차액 114만원, 지출잔액 18억 1,541만 1,347원임.
- 부서별 집행률 저조 사업 현황은 보고서 3쪽, 4쪽을 참고 바람.

○ 다음 회계연도 이월 사업 현황으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 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3건 31억 143만 4,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4건 7억 8,271만 4,470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예산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집행에 신속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총 전용금액은 340만원임.

2. 2021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결산

○ 2021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72억 1,051만 6,520원이며, 수납액 750억 7,480만 9,045원으로 징수율은 98.09%임.

○ 2021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79억 2,751만 7,520원이며, 지출액은 454억 6,026만 6,834원으로 집행률은 58.34%임.

○ 집행잔액은 270억 6,546만 6,141원이며, 집행잔액원인별 금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9,376만 335원, 예산절감액 2,973만 7,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399만원 지출잔액 29억 3,546만 7,806원, 예비비 240억 251만 1,000원임.

○ 다음 회계연도 이월 사업 현황으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 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3건 43억 4,972만 8,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3건 10억 3,048만 3,530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예산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집행에 신속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총 전용금액은 1,699만 7,000원임.

3. 2021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예비비 지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일반회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유동 인구 감소로 경영위기에 처한 마을버스 업체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총 3건 3억 8,748만 1,850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통합주차관제 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 용역비 및 용역 실시결과 당초 예측하지 못한 공사비 9,087만 7,400원을 지출하였음.

4. 2021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 결산

- 2021년 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총 2건이 은 전년대비 4억 8,201만 4,059원이 증가한 27억 672만 3,278원 조성되고 이중 12억 4,406만 3,400원이 사용되었음.

5. 검토의견

○ 검토의견으로는

2021년 교통건설국은 편리한 교통행정 및 주차질서 확립, 사람 중심의 도로·치수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9개 정책사업목표와 양질의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 쾌적한 교통환경 개선,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등 19개의 단위사업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한 결과, 초과달성 1, 달성 15, 미달성 3으로 성과달성도 84.21%를 나타내고 있음.

○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4항에 의거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 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목표 미달성 사업은 물론 초과 달성 지표에 대한 성과지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예산 집행은 적정한지를 연초 계획과 비교 심사하고 구체적 실행 목표가 달성되도록 중간성과평가 등을 통해 2022년도 예상 달성률을 측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2023년도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의 성과관리를 통해 미래 재정 운용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예산 불용이 반드시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집행잔액이 많은 예산은 과다 책정되었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한정된 재원의 배분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적기 예산집행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연도 예산의 과도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률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필요한 것으로 교통건설국의 이월 사업 현황 대부분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나 구체적 이월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예산이 이월될 경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이 지연됨으로서 주민 불편함을 초래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의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가급적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재정 운영의 탄력성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로써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또는 동일 단위사업내 목 그룹간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임.
- 교통건설국 전용은 일반회계 2건, 특별회계 3건 총 2,039만 7,000원으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집행 잔액을 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전용 사유의 타당성 또는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관련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수요를 명확히 산출하여 예산전용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된 것처럼,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비비 집행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예비비로 집행해야만 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에는 예산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을 우선적으로 총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기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기금은 적정금액이 조성되도록 하고, 사업추진은 적기에 각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해야 할 것임.
- 결산승인은 집행부가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집행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사후적 승인을 통하여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올바르게 적정하게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예산을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 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임.
- 일반적으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예산편성 단계보다 다소 소홀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완·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
- 따라서,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¹⁾에 따른 재정수지균형의 적정성, ‘예산 한정성의 원칙’²⁾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³⁾에 따른 예산의 전용 또는 변경, 명시·사고이월, 예비비 사용, 예산

1)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 예산은 연도 간,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분야·부문·정책사업간의 상호용통·이용의 금지,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외 지출의 금지, 회계연도의 독립 등을 포함하는 개념.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며,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받게 됨.

3)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이나 분야

의 초과지출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고,

-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예산의 전용 또는 변경을 통해 증감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분야별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예산심의과정에서 보고된 각종 사업계획의 성과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부문·정책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음. 이에 대한 예외로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등이 있음.